

천연케이싱 검역요령(제34조 관련)

1. 반추동물 또는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산 천연케이싱의 검역방법

가. 검역장소
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에 따라 반추동물 또는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산 천연케이싱은 입항지에 소재한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.

나.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

- 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 반입된 천연케이싱에 대하여 「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」 제34조에 따라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한다.

다. 소독방법

-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 방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2. 수입금지 지역산 돼지유래 천연케이싱 및 수입금지 지역에서 가공된 수입허용 국가산 면양 또는 산양유래 천연케이싱의 검역방법

가. 검역장소
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산 돼지유래 천연케이싱 및 수입금지 지역에서 가공된 수입허용 국가산 면양 또는 산양유래 천연케이싱은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.

나.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

-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는 검역시행장에 반입된 천연케이싱에 대하여 「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」 제34조에 따라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한다.

다. 소독방법

1) 천연케이싱

가) 염산식염수를 사용하는 경우

-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18℃ 염산식염수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 다음 중탄산소다 용액(0.8% 이상)을 채워서 소독이 종료된 케이싱을 30분간 중화한다.

나)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

-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배 희석액에 18℃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다.

2) 천연케이싱 포장 용기

가) 염산식염수를 사용하는 경우

- 소독목적물에 염산식염수를 채운 뒤 1시간 이상 그대로 둔 후 중탄산소다용액(0.8% 이상)과 교체하여 다시 30분 이상 둔다.

나)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

- 소독목적물에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배 희석액을 채운 뒤 2시간 이상 그대로 둔다.

라. 소독 절차 및 확인

- 천연케이싱은 통관 후 검역시행장 출고 전에 소독작업을 실시한다.
- 검역관은 관리수의사가 제출한 육류검사성적서, 축산물검사성적서 소독내용 확인 후 천연케이싱 보관 용기 등에 "소독필증"(시행규칙 별지 10) 날인한다.